공개

의안번호	제 5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의결사항

㈜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1. 의결주문

㈜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가상자산사업자 ㈜씨피랩스에 대한 2025년 제19차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2025.11.5.)과 관련하여 2025.12.2. ㈜씨피랩스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이의신청 기각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붙임> 참조)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8.) 심의필

(별지)

㈜씨피랩스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금융위원회는 ㈜씨피랩스가 2025. 12. 2. 신청한 조치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씨피랩스

□ 기각사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당초 조치명령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지 아니함

① (조치내용) 신청인은 금융위원회의 이용자 자산 이전 등의 조치명령이 입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 가상자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조치명령이 가능함

- 또한, 신청인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금융감독원 검사 거부(자료 미제출 등)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불가함

②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신청인은 '20.11월 가상자산거래소를 종료하여 영업성이 상실되었으므로, '24.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나,

- 영업 종료 이후의 청산·잔존사무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이용자 자산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행위도 영업에 해당함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 또한, 신청인은 '24.7월 가상자산법 시행 당시에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신청인은「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보관업)로 신고('22.1월~'25.1월),
②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가상자산법으로 그대로 이관('24.7월)

③ (재단의 법적근거) 신청인은 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항, 재단에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 재단은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24.9월)를 받았으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은 영업종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종적·보충적 수단*인 점을 감안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그간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면담, 2)비조치의견서, 3)유권해석(민원), 4)협조공문, 5)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수행

< 붙임 >

관 계 법 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자
3. 관리기관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5.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50	02-3145-8160